

#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60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 공공한옥 중 사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역사가옥, 홍건익가옥의 민간위탁 협약해지에 따라, 홍건익가옥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 나. 위탁 개요
- 대상시설 : 홍건익가옥(시 민속문화재 제 33호)
  - 소재지 : 종로구 필운대로 1길 14-4(경복궁서측 지역)
  - 시설규모 : 대지 740.5㎡, 연면적 154.63㎡
  -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안) : 368백만원 ※ '23년 예산: 345 백만원

#### 다. 주요 위탁내용

- 경복궁서측 지역의 역사문화 전시 기획·운영
- 근·현대기 한옥의 변화양상 전시 기획·운영
- 지역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 내 문화주체와의 협력사업 개발·운영
- 한옥 주거문화(K-리빙)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시민홍보 및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사무국 구성·운영 등

#### 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한옥정책과-5367, '23.6.8.)

#### 마. 민간위탁 지속 운영 필요성

- 홍건익가옥은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유일한 문화전시 용도의 공공한옥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대시민 서비스 거점이자 지역의 장소적 유산과 가치를 확산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문적 운영 위해 민간위탁 추진, 서울의 삶과 한옥의 품격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옴
- 그동안 구축해 놓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옥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응한 전문적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올해 발표한 <서울한옥 4.0> 정책 확산거점으로 활용도 증대 등 프로그램 고도화 위해서는 관련 분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한 전문단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 필요함

## 바. 기대효과

- 가옥의 시설관리와 정책적 사무는 시에서 유지하고, 가옥의 전시기획·조성 및 대시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분리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능률성·효율성 확보
-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가옥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종합적 활용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서울 공공한옥의 경쟁력·지속성 확보

## 3. 추진일정

### 가. 추진현황

-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한옥조성과-10481, '16.9.28.)
-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림가옥) 사무 민간위탁 운영('17.5.1.~)
-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분리운영 추진계획」 (한옥건축자산과-2092, '20.2.20.)
-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림가옥) 개별 민간위탁 운영('21.1.1.~)
-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한옥정책과-5367, '23.6.8.)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7.5. 조직담당관)

위탁사무명	유 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홍건익가옥 운영	재위탁	사무형	3년	적정

### 나. 향후계획

- 제320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23.8.28. ~ 9.15.)
- 홍건익가옥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 심의위원회('23.9월 ~ 10월)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위탁사무 인수인계('23.10월 ~ 12월)
- 홍건익가옥 수탁기관 운영('24.1월 ~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6조

제36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편성(예정)

다. 합 의 : 조직담당관 심의('23. 7. 5.)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결과(적정)

※ 작성자 :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유미옥(☎ 2133-5582)